

경찰실무종합

본 해설의 저작권은
두연(다음카페 cafe.daum.net/endus)에
있습니다. 무단복제시 저작권법에 의거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안병하 치안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 으로서 전라남도 경찰들에게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 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를 강조하였다.

- ① ㉠ - 호국정신 ㉡ - 인권보호
- ② ㉠ - 비례의 원칙 ㉡ - 질서유지
- ③ ㉠ - 호국정신 ㉡ - 질서유지
- ④ ㉠ - 비례의 원칙 ㉡ - 인권보호

1. 정답 ④

안병하 치안감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

※ (아두스·두연) 안병하 치안감 사례는 아니나 모의고사에 문형순 경감(‘부당함으로 불이행’)과 안종삼 서장(‘내가 죽더라도 방면’) 내용 바꾼 문제 有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위험의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 ② 오상위험이란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위험의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손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를 의미하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경찰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2. 정답 ②

위험에 대한 인식 관련 2번 선지는 외관적 위험을 설명

외관적 위험	① 경찰이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 ②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국가의 손실 보상은 인정 될 수 있음.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① 경찰이 객관적으로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 ② 이 경우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 할 수 있음.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시·도경찰청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더라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없다.

3. 정답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약칭 경찰법(이하 경찰법) 제16조 제5항)

4.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 ②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 ④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4. 정답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2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원휴직) 제2항 3호

5. 다음은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공무원법」상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거친다.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 ㉣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① ㉠(X) ㉡(O) ㉢(X) ㉣(O)
- ② ㉠(O) ㉡(X) ㉢(O) ㉣(O)
- ③ ㉠(X) ㉡(O) ㉢(O) ㉣(O)
- ④ ㉠(X) ㉡(O) ㉢(O) ㉣(X)

5. 정답 ③

㉠

시보임용 (제13조)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4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6호

㉣ 경찰공무원법 제28조(직권면직)

직권면직 (제28조)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①)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장 논란이 되었고 실제 이의제기에 들어간 지문이었습니다. 교수출제가 실시되면서 채용기출문제 일부에서도 법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8조 직권면직 조항 자체는 임의규정입니다. 법조항 자체를 그대로 인용해서 출제하였으므로 복수 정답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문제집을 풀며 '2호 해당사항에 직권(x), 징계위원회 동의(o)'로 한 번쯤 틀리신 기억이 있으실 것이기에 아쉬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법」상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 시·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 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이상의 경찰공무원을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6. 정답 ①

치안총감, 치안정감을 제외

신분 및 직위 보유권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경찰공무원법(제36조)	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후임자의 보충발령 관련 규정)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 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임용제정지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정답 ④

고충처리 (제76조의2)	①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경찰행정관청의 특정행위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으며,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 보다 더 커야 적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 있다.
- ③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④ 경찰비례의 원칙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위반한 경찰작용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정답 ④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7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를 들 수 있음.

9.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해당 집회 참가가 불법 행위라도, 집회 장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없다.

9. 정답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증표의 제시의무는 없다.
- ④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조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10. 정답 ③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1.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X) ㉡(O) ㉢(O) ㉣(X)
- ② ㉠(O) ㉡(X) ㉢(O) ㉣(X)
- ③ ㉠(X) ㉡(X) ㉢(X) ㉣(O)
- ④ ㉠(X) ㉡(X) ㉢(O) ㉣(O)

11. 정답 ④

(xx○○)

㉠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전자총격기등의 사용제한 (제8조)	①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총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지서는 아니된다.
--------------------	---

㉔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 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의 발생 억제
-------------------	--

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

12.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상 모든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 ②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상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 ③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보호지역 중 제한 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 ④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 하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에 해당한다.

12. 정답 ④

- 1. **I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3. **I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1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㉑ P경찰관은 부서에서 많은 동료들이 단독 출장을 가면서도 공공연하게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퇴근 후 잠깐 들러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퇴근시간을 허위 기록되게 하는 것을 보고, P경찰관도 동료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 ㉒ 경찰관은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피로회복 음료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다음주는 식사대접을 받았다. 순찰나갈 때 마다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습관이 들었고, 주민들도 경찰관이 순찰을 나가면 마음의 선물이라며 뇌물을 주는 것이 관례가되어 버렸다.

- ① ㉑ - 전체사회 가설 ㉒ - 구조원인 가설
- ② ㉑ - 썩은 사과 가설 ㉒ - 구조원인 가설
- ③ ㉑ - 구조원인 가설 ㉒ - 전체사회 가설
- ④ ㉑ - 구조원인 가설 ㉒ - 썩은 사과 가설

13. 정답 ③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지컬의 공연 제작사 대표이사 **甲**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5만 원 상당(1인당 5만 원)의 음식 값을 **甲**이 지불한 경우
- ② 경찰서장이 소속부서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한 경우
- ③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경찰관이 4촌 형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냉장고를 선물 받은 경우
- ④ 경찰관이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에서 당첨되어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경우

14. 정답 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①번 사안은 3만원 **을 초과하여 틀린 지문이다.**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직급에 상관 없이 모든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30만 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은 45만 원이다.
- ④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렸다면 이와 별도로 거절하는 의사는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15. 정답 ①

- ② '누구든지' 가능(청탁금지법 제13조)
- ③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④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7조)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1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이 기관이 아닌 개인인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다.
- ④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6. 정답 ③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6조)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거래하는 행위.

17.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이 우범지역인 A지역과 B지역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지역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지역에서 순찰 근무시간을 대부분 할애한 경우는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 ③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지명령에 불응하는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부상을입고 사망한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
- ④ 경찰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17. 정답 ④

공공의 신뢰에 관한 설명

18. 인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상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보호담당관은 분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③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침해사건 조사절차에서 사건이종결되어 더 이상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8. 정답 ②

점검 (제24조)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9. 경찰활동 전략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은 경찰이 지역 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지역중심 경찰활동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병행되어 실시될 때 효과성이 제고된다.
- ③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는데, 이 모형은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로 진행된다.
- ④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전략에 보다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19. 정답 ③

SARA모형은 문제지향경찰활동에 대한 설명(x:무관용경찰활동)

20.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칙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 ②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법정형으로 볼 때, 두 경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 ④ ‘폭행 등 예비’와 ‘거짓 광고’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정답 ④

‘폭행 등 예비’는 10만원이나 ‘거짓 광고’는 20만원 이하

21. 실종아동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 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 되지 않은 찾은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②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서의 장은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1. 정답 ②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발견지 (제8호)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	--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 학대행위자에게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정답 ①

현장출동(제11조)

-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의무를 부과<신설 2021. 1. 26.>**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55조의2에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고지해야 한다.
- ③ 甲의 배우자였던 乙이 甲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112종합상황실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그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처리할 수 없다.
-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23. 정답 ③

(배우자였던 자는 대상에 해당한다 / ※ 비동거가족(x))

가정구성원 (제2호)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

2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 ②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대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휴게 및 식사시간도 기타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 ④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내에서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방문민원 및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4. 정답 ②

일일근무 지정 (제29조)	⑥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대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대기 근무 로 지정할 수 있다.
-------------------	---

25. 변사사건 및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과 같이준현장지문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②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켜야 하며, 검시에 참여한 검시 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은 주민 등록증발급신청서·외국인의 생체정보·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④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25. 정답 ②

변사자의 검시·검증 (제27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 검시 조사관을 참여 시켜야 한다.(X)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	--

26. 지명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이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 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가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 관서보다 지명수배자를 먼저 인계받아 조사해야 한다.
- ② 「범죄수사규칙」상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 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였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 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④ 「범죄수사규칙」상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 으로서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정답 ①

지명수배자 인수순서(싼공중구거인)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 법정형이 중한 죄명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27.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및 진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이법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불만집단이 자진해산 및 분산하게 하는 정책적 치료법이다.
- ② 봉쇄방어는 군중이 중요시설이나 기관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부대가 선점하여 바리케이트 등으로 봉쇄 하는 방어조치로 충돌없이 효과적으로 무산시키는 진압의 기본 원칙이다.
- ③ 세력분산은 일단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부대가 대형으로 진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통제력을 차단하며, 수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의사를 약화시키는진압의 기본원칙이다
- ④ 자연정화법은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정책적 치료법이다.

27. 정답 ①

(※경대/전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 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28.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표소 경비에 대한 3선 개념 중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검문조·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 ② 「공직선거법」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이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시 개표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언동을 하는 자에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 ④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8. 정답 ②

4)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83조)

- ③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작전비상 - 갑호 -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 ㉡ 교통비상 - 을호 -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및 사고발생시
- ㉢ 경비비상 - 병호 -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 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사비상 - 갑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 ① ㉠(O) ㉡(X) ㉢(X) ㉣(O)
- ② ㉠(O) ㉡(X) ㉢(O) ㉣(O)
- ③ ㉠(X) ㉡(X) ㉢(O) ㉣(X)
- ④ ㉠(O) ㉡(O) ㉢(X) ㉣(X)

29. 정답 ①

경비비상	갑호	1.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의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 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가용경력을 100% 동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호	1.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 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 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호	1.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 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30%를 동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전비상	갑호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을호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 되는 경우
	병호	정·첩보에 의해 적 침투에 대비한 고도의 경계강화 가 필요한 경우
정보비상	갑호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 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시
	을호	상기 상황에서 특정지역·요지 에 대한 검문검색 필요시
수사비상	갑호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을호	중요범죄 사건발생시
교통비상	갑호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 혼란 및 사고발생 시
	을호	상기 징후가 예상 될 시
경계강화	기능공통	“병호”비상보다는 낮은 단계로,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시 적용	“경계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 할 필요가 있을 때

30. 재난 및 대테러경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②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C급 다중이용건축물등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이란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경찰 재난관리 규칙」상 시·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실을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시·도경찰청등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발령된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0. 정답 ④

‘심각’ 단계 발령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4조)

31.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사고 및 현장도면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 현장도면 작성시 교통사고의 발생지점과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중앙에 배치하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과 정차지점을 실선으로 표시한다.
- ②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 현장도면 작성시 거리를 측정하거나지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에 대한 명칭을 붙여특정지어야 한다.
- ③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하였다는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중상자와 동일하게취급해야 한다.
- ④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 보존 등부득이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교통사고 조사중’ 표지판을 사고현장전·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1. 정답 ①

이동지점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상식선에서 해결)

32. 다음 ㉠부터 ㉣까지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단서 각 호에 해당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32. 정답 ④

㉣ 62조(횡단 등의 금지) 규정은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33.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 못한다.
- ②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도시 지역의 간선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시장등은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나,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3. 정답 ②

(간선도로 ⇒ 이면도로)

2)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9조)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34.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주·정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 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 ③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④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정답 ①

7)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8)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5.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그 밖의 지역'의 소음기준으로 적용한다.
-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소음측정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확성기등의소음기준에서 주거지역의 주간(07:00~해지기 전)시간대 등가소음도(Leq)는 65dB 이하이다.

35. 정답 ①

→ 국경일과 호국·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는 그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호

3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래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정한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혼잡이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로인 하위 1개 차로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시간 동안 2회에걸쳐 약 15분 동안 연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최행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 ④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이탈로 인하여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6. 정답 ②

→ 볼 수 없다.(2009도10425)

37.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 인도법」상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작위 또는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합중국 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 범위에 포함된다.
- ③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 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 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의 정보 및자료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상 파견국 국민이 영사 관할 구역안에서 구속된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37. 정답 ②

전속적 재판권	대한민국과 미군당국 중 어느 일방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다른 일방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함
경합적 재판권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보유함 예외적으로 미군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보유하는 경우 ①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이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②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군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보유함(협정 제22조 제3항 (가))

38.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검사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 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③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인수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 ④ 피호송자의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송부하나,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38. 정답 ③

1.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3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에해당된다.
- ③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안’에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에 관한 사안도 해당된다.
- ④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9. 정답 ②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비해당범죄 ※균형법상 일반이적죄는 해당범죄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죄(내일전/단/반찬회) : 형법상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균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 회합·통신죄
(참고용) 보안관찰 해당범죄(목자잡편금) : 국가보안법(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금품수수죄)

40.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40. 정답 ④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	통신비밀 보호법 제 2조 제 11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자의 성명 ②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③ 이용자의 주소 ④ 이용자의 전화번호 ⑤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⑥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④ 사용도수 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⑥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⑦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